

소방활동방해죄의 의미와 구성요건 개선에 관한 검토 -119구급활동 방해를 중심으로-

홍 영 표*

I. 들어가며

II. 소방활동에서 구급활동이 갖는 특수성 검토

1. 소방활동에서 구급활동이 갖는 의미
2. 구급활동의 방해에 대한 검토
3. 구급활동과 「형법」 상 공무집행방해죄와의 관계

III. 구급활동에서 소방활동 방해죄 적용의 문제

1. 소방활동방해죄 적용의 판례의 입장
2. 법률문언 해석 상 소방활동의 시작과 종료의 문제
3. 죄수문제
4. 관계법령상 포함되지 않은 구급대원의 문제

IV. 소방활동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

1. 소방활동 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의 개정요청
2. 특별사법경찰제도 관련 법률의 개정
3. 「소방기본법」 상 방해행위 제지 조항의 구체적 매뉴얼 마련

V. 나가며

I. 들어가며

안전불감증과 사회시설의 고도화·노후화에 따라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지속되고 있다. 분당 정자교 붕괴, 이태원 참사와 같이 예측이 어렵고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면서 사건·사고들 속에서 다양하고 많은 응급환자가 발생하고 있

* 논문접수: 2023. 9. 3. * 심사개시: 2023. 9. 12. * 게재확정: 2023. 9. 27.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수료, 용인소방서 제2 119구급대 구급3팀장, 1급 응급구조사.

으며, 이러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국가는 응급의료시스템을 갖추고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응급의료시스템은 다양한 위협에서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갖추어진 시스템이며, 그 중에서 구급활동은 심정지 등 중증질환이나, 외상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고도의 전문 응급처치로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하고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골든타임 내에 전문의료인에게 치료를 받게 하는 병원전단계와 병원단계의 응급의료체계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긴급을 요하는 응급현장에서 구급대원 폭행 등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소방당국의 적절한 홍보 및 경찰의 공동 대응 등 강력한 처벌 의지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구급활동에 대한 방해는 소방활동에 포함되면서도, 신분이 소방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집행방해죄와 그 성격이 유사하고, 구급활동의 직무를 살펴보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상담·이송 등 응급의료를 직무로 한다는 점에서 응급의료방해죄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119구급대에 의한 구급활동은 법률적으로는 「소방기본법」¹⁾과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²⁾(이하 ‘119법’이라 한다.)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구급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폭넓게 소방활동방해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소방활동 방해의 의미와 소방에서 가장 많은 출동을 담당하고 있는 구급활동이라는 직무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소방활동방해죄를 규율하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현실적 한계를 파악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2)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제13조(구조·구급활동) ① 소방청장 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그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II. 소방활동에서 구급활동이 갖는 특수성 검토

1. 소방활동에서 구급활동이 갖는 의미

소방공무원인 119구급대원의 직무를 소방활동에서부터 구급활동으로 축소시켜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래 「소방기본법」에서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안」으로 구체화된 배경과 그 활동에 의미가 있다.³⁾

소방활동은 구급활동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⁴⁾이며 화재, 재난·재해 등 각종 재난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소방대의 권한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주로 화재 및 재난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즉시강제 성격⁵⁾이 강하며, 구급활동은 응급의료의 성격으로 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환자의 기본권이 중요시 되어, 병원 이송 및 응급처치 등 의료분쟁의 성격을 보여 소방활동의 범주와는 활동의 성격이 달라 구급활동을 구체화하여 정의하거나, 법률을 적용하기에는 부적당한 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9법」 상 구급이라는 정의⁶⁾에 대해서는 응급환자의 개념과 응급처치 등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차용하고 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권리,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 등 응급환자, 그 보호자와 응급의료종사자와의 갈등관계에서 오는 폭행 및 기물파손 등⁷⁾의 성격과 유사하며 소방활동으로 방해 받기보다는 오

3)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2009.2.1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하여 장애정도를 경감시키고 소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119구조·구급대원에 대해 전문적 훈련과 교육 등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원활한 구조·구급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4)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5) 정철호, 권영복, “소방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행정상 즉시강제의 활용방안”, 위기관리논집(제14권 3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8. 3. 159면 참조.

6) 「119구조·구급에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

7) 임태호, “응급실 의료인 폭행실태와 개선방안”, 의료정책포럼(제9권 4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1. 12. 82면 참조.

히려 응급의료방해와 유사하게 방해를 받게 된다.

2. 구급활동의 방해에 대한 검토

「119법」의 목적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구급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상 목적과는 크게 차이가 없으나, 구조·구급활동에 대한 대원의 임명 및 세부적인 집행계획 등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조직 내 행정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이 법의 주요 제정목적이며, 초창기 「소방기본법」에서 구조·구급활동을 규율하던 것을 보다 전문화시키는 데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복잡·다변적인 구조·구급상황에서 특수한 현장활동에 대한 근거는 많은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보완해야 할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9법」에서의 방해행위 규정을 살펴보면 제13조⁸⁾를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제15조⁹⁾를 위반하여 긴급조치를 방해하는 행위, 제23조의 2¹⁰⁾를 위반하여 구급대가 이송한 환자에 대해 감염병 통보를 위반한 행위가 있는데, 특히 감염병 통보의무는 ‘통보하지 않은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과실범도 포함되는지, 자체로 고의범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8) 「119법」 제13조(구조·구급활동) 제1항 ‘소방청장 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를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 등의 이송, 그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9) 「119법」 제15조(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제1항 ‘소방청장 등은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토지·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

10) 「119법」 제23조의 2(감염병 환자등의 통보 등) 제1항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 2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 환자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 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감염병의 전파력이라는 특수성과 119구급대는 불특정 다수의 응급환자를 이송한다는 점에서 사후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혈관’적인 119구급대의 구성요소의 ‘인력’과 장비의 공백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은 신속하게 감염병 진단의 통보의무를 가지는 바 종국적으로는 ‘구급활동의 방해’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소방기본법」 및 「119법」에서 방해행위를 규정하여 규제하는 이유는 소방활동의 기본 목적인 화재 및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하는 구조·구급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기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급활동은 각종 재난에 의해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적시에 응급처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전문의료인에 의한 치료를 빠른 시간 내에 받게 함으로써 손상을 최소화하며, 예방 가능한 죽음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3. 구급활동과 「형법」 상 공무집행방해죄와의 관계

구급활동은 결국 소방공무원이 집행한다는 점에서, 「형법」 상 공무집행방해죄와도 비교할 수 있다. 두 개의 죄는 국가기능의 보호라는 점에서 공통된 보호법익을 가질 수 있으며 그 내용도 ‘폭행’, ‘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을 한다는 점에서도 비슷하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와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각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현행 「형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여기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공무방해에서 공무는 공통적으로 공무원에 의하여 실현되는 국가기능 즉 공무이다. 좁은 의미로는 공무원의 직무 가운데 필요한 경우 강제력이 동원되는 권력 작용에 국한되어야 한다.¹¹⁾는 견해가 있는데, 이 소방활동의 경우도 이러한 강제력이 동원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객체인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와 소방활동방해죄의 구성요건에 유의미한 판례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로서 청사의 안전관리 및 안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례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분주의가 작용한다는 점은 후술하겠지만 「소방기본법」 및 「119법」에 명시된 소방대의 구성원 외의 인력이 구급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여야 한다.

III. 구급활동에서 소방활동 방해죄 적용의 문제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을 함에 있어 가장 많은 방해를 받은 출동유형은 아무래도 가장 많은 출동을 담당하는 ‘구급활동’이다. 방해는 보통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형태와 구급장비 등을 파손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다른 면에서는 구급대원이 응급환자에게 대한 문진을 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때 거짓으로 진술하여 의료기관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하는 등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방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방해가 발생함에 있어 현재 소방활동방해의 구성요건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문제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1. 소방활동방해죄 적용의 판례의 입장

2023년 소방청 119구급서비스 통계 연보¹²⁾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49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하였고, 소방특별사법경찰이 560건, 경찰이 171건을 수사하여 징역형이 36건, 벌금형이 251건 등으로 통계가 집계 되어있다.

여기서 가해자가 음주상태인 경우가 617건으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하급심 판례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11) 이상돈, 「형법강론」 제2판, 2017., 119면 참고.

12) 소방청, “2023년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 181면 참고.

에게 뺨을 때리고 난동을 부린 사안에서 119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하면서 이를 국가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면서¹³⁾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욕설과 얼굴을 1회 가격한 사건의 판결에서 주요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피해자인 구급대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양형사유로 들고 있다.¹⁴⁾

구급활동 중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사건 판결은 대개 내용은 비슷하나 「소방기본법」과 「119법」 위반을 혼용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개 폭행과 협박이 있을 경우는 「소방기본법」을, 그 외 구급차 내 기물파손 및 욕설 및 기타의 방해가 있었을 경우는 「119법」 위반으로 인식되고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법률문언 해석 상 소방활동의 시작과 종료의 문제

법률 상 구성요건으로 소방활동의 문언을 살펴보면 소방활동방해죄는 「소방기본법」의 경우 제16조제2항에서 ‘출동한’ 소방대를 객체로 하고 있으며, 「119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동한’ 구조·구급대를 객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동한’이라는 문구의 시간적 범위에 따라 구성요건의 해당성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가령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을 때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을 때를 포괄한다.¹⁵⁾는 대법원의 판례는 공무원이 출근하여 퇴근하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13) 수원지방법원 2020.3.27. 선고 2019고단7264 판결.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10.27. 2020고단2117 판결.

15) 대법원 2022.3.17. 선고 2021도13883 판결, ‘시청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소속공무원이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소속공무원의 목살을 잡고 수회 혼든 다음 뺨을 때림으로써 시청공무원들의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에 대한 의미에 대한 판단.

공무를 집행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사례로 피고인이 119구급대원으로부터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의 응급실까지 이송되었으나, 진료를 거부하며 병원에서 나와 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유하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사안에서, 법원은 119구급대원이 피고인에게 응급조치를 마친 후 병원에 이송함으로써 해당 구조·구급활동은 종료하였으므로, 이 후 피고인의 행위는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시를 한바 있다.¹⁶⁾

이 경우 소방공무원인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행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소방공무원의 직무 집행행위가 대기행위와 출동행위로 구분되어 ‘출동한’의 문구를 조금더 넓고 동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¹⁷⁾고 보는 견해가 있다.

마찬가지로 소방활동 특히나 구급활동에서는 출동하여 해당 재난을 해결하고 난 뒤에도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가령 119구급대원이 병원 이송을 마친 뒤 의료진과의 갈등을 이유로 의료진에 의한 반복적인 욕설을 들은 뒤 다음 출동에 지장을 줄 만큼 민원성 협박과 문자를 보낸다던가, 구급활동을 마친 뒤 구급 민원인과의 갈등으로 계속된 전화와 해명을 요구하는 것도 일종의 방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동한’이라고 소방활동을 좁게 해석한다면 이러한 사례들은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되어 소방활동의 법익보호가 무색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소방활동의 보호법익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확보를 위한 국가기능의 보호적인 측면에서도 넓게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죄수문제

소방활동방해는 전술하였듯이 법률상의 방해는 물론이거니와 특히나 여성

16) 창원지방법원 2017.11.15. 선고 2017노1955 판결.

17) 이정원,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규제법률과 구성요건 및 죄수”,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65호), 대검찰청, 2019. 12., 344면 참조.

구급대원에 대한 성추행, 모욕,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형태로 방해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듯 소방활동방해는 한 가지 행위로 인해 여러 가지 죄가 성립하는 복합적인 행위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죄수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나 출동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의 사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하급심 판례는 특수공무집행방해¹⁸⁾·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¹⁹⁾, 소방기본법위반²⁰⁾을 각 일죄로 처벌한 판결과 공무집행방해와 119구조·구급에관한 법률위반²¹⁾등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한 판결들이 모두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의 소방활동의 방해 행위에 대해 법률적용의 일관성을 가지고 판결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119법」이 「소방기본법」에서 분화되어 나온 이유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 「119법」이 「소방기본법」에서 분리된 이유는 그 만큼 구조·구급의 수요가 늘어났으며,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 아래 결국에는 국민의 기본권인 안

18) 울산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고단967, 판결 ‘피고인은 “협심증이 있다. 가슴에 통증이 있다. 호흡이 힘들다.”는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위협한 물건인 칼을 들이대며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고, “가라. 다가오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구급대원을 협박한 사건에서 소방공무원의 긴급구조 신고처리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건’.

19)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노721 판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구급대원에 의해 응급실로 이송되어 진료를 기다리던 중 구급대원이 피해자의 의식을 확인을 위해 흉골 부위를 누르자 “아이 심할, 너 이리 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구급대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고단1517 판결, ‘피고인은 원인불상의 약 3cm가량의 열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되어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며, 갑자기 옷을 벗으며 구급대원에게 “지금 실수하신 거예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저 삼거리파 건달이거든요.”라며 주먹으로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리고 폭행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건’.

21) 창원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고단1356 판결 ‘피고인은 창원소계 노래방에서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자 112에 신고 구급대원이 출동하였으며, 구급대원이 의식을 확인하고 병원후송의 필요성이 있어 구급차에 태우려하자 “뺨할놈아, 너자들 소속이 어디고, 이름이 뭐고? 너죽인다. 내일보자” 욕설을 하며 구급대원의 옷깃을 잡고 욕설을 하며 구급대원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을 한 사건으로 구급대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사건으로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죄로 선고받은 사건’.

전한 삶을 영위하는 국가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야 한다. 양 법률은 소방활동방해 또는 구조·구급활동방해를 구성요건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고, 넓게는 소방활동이지만, 좁게는 화재, 구조·구급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다양한 소방활동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119구급대원이 폭행 또는 협박 등 구급활동을 방해받았을 경우 「119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119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관계법령상 포함되지 않은 구급대원의 문제

소방공무원 중 특히 구급대원의 경우 여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구급대원도 육아문제로 휴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1급응급구조사 자격 또는 간호사면허 소지자를 요건으로 하여 기간제근로자(이하 ‘구급대체인력’이라 한다.)를 선발하여 구급대원과 함께 출동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출동한 구급대체인력이 폭행·협박 등 소방공무원과 동일한 소방활동방해를 받은 경우 소방활동방해죄 또는 구조·구급활동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소방기본법」은 소방활동방해죄의 객체인 ‘소방대’의 구성원을 동법 제2조 제5호에서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119법」에서도 구조·구급활동 방해의 객체를 ‘119구조대’와 ‘119구급대’의 대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대원들은 모두 소방공무원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방공무원이 아닌 구급대체인력은 소방서장과 계약을 통해 구급활동의 명령을 받고 구급대원과 동일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신분이 다름에 따라 다른 법령이 적용되고 있는 구조이다.

이는 유사판례²²⁾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 등

의 사무를 담당한 자를 법령에 기하여 「형법」 상 공무원이라 보기 어렵다는 판시 사항은 이들 구급대체 인력도 소방활동방해죄의 객체가 되기 어려워 보여 법률의 개정 등 개선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소방활동방해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있는 소방특사경이 신속하게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에 있어 구급대체인력은 제외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문제가 생기면 구급대체인력 개인이 「형법」 상 폭행죄 등으로 단독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활동이라는 보호법익을 수호하는 데 있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상 응급의료종사자의 지위로서 방해금지 조항에 주체가 될 수 있지만²³⁾ 소방서에 소속되어 구급활동을 하는 구급대체인력이 「소방기본법」과 「119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구급대체인력 등이 구급 현장활동 중 폭행을 당하는 방해 받은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상 응급실이라는 공간에 한정²⁴⁾되어 있어 이 법에 의해서도 방해에 대해 보호받을 수 없을 수 있다.

IV. 소방활동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

1. 소방활동 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의 개정요청

소방활동은 국민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활동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22)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3430 판결.

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계(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국가기능 중 하나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미 발생한 화재, 재난·재해 등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대에 대한 구성요건을 좁게 해석함으로써 각종 방해에 대해 언급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구성요건을 따져 물은 것도 사실이다.

다양한 재난에 대한 소방활동 등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방활동방해를 구성하는 객체, 다시 말해 구급대체인력들이 포함되는 소방대의 정의나 119구급대원의 구성원을 넓히는 등 넓게 포섭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르는 법개정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소방활동의 다양한 범주인 구조·구급 및 생활안전활동도 「소방기본법」의 별도의 법률로 규정된 취지에 맞추어 소방수요도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계 법률의 개정은 필수적이다. 가령 관내 구급차가 공백일 때 응급환자를 대응하기 위해 화재진압을 담당하는 소방펌프차가 펌블런스의 개념으로 초기 응급처치에 투입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구급대응을 위해서라도 「119법」 중심으로 다양한 개념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2. 특별사법경찰제도 관련 법률의 개정

전술하였지만, 소방활동방해가 일어나면 수사의 주체가 소방특별사법경찰이나, 일반사법경찰이나의 문제가 있다. 보통은 관할이 경합하는 관계로, 실무적으로는 일선 지구대 경찰을 통해 일반사법경찰이 범죄인지를 하였다가, 소방공무원 단독 피해사건이면 소방특사경으로 인계하거나, 피해자 중 경찰이 있거나 일반인등이 섞여 있으면, 경찰에서 수사하여 검찰송치를 하게 된다.

더군다나 소방활동방해를 주요내용으로 한 개의 위법행위에 대한 피해자가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등이 포함되어있으면 소방특사경은 수사권한이 없게 되어 「형법」 등 포괄적인 수사권한이 있는 일반사법경찰이 수사하게 된다.

특사경 제도는 전문분야에 대한 범죄수사에 있어 일반사법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범죄 수사권을 특별히 부여할 필요에 따라 생겨난 것이 특별사법경찰제도²⁵⁾인 점을 감안하면 소방활동 중 발생되

는 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신분이 아닌 소방활동방해죄를 우선 적용하여 소방특사경이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와 달리 소방활동방해죄를 규정하고 처벌도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높은 만큼 그 취지를 잘 살릴 필요가 있다. 이는 재난안전분야에서 소방특사경의 수사능력 배양과 신속성을 통해 특사경범주에서도 다양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이 요구될 것이다.

3. 「소방기본법」 상 방해행위 제지 조항의 구체적 매뉴얼 마련

소방활동 중 가장 많은 출동을 담당하는 구급활동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한다. 대표적으로는 주취자의 폭력상황, 정신질환자의 난동상황 등 119구급대원이 제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관의 공동대응을 통하여 상황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두 개 기관이 동시에 매번 출동할 수 없는 점과 신속한 상황 해결을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인 119구급대원에게도 난동상황을 제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필요했다.

한 사례로 주취자의 폭력상황에 대처를 하던 119구급대원이 과도한 제압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되었으며,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등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이때 재판부는 구급대원이 주취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주취자가 욕설을 하고 달려들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위해를 가하지 않았던 점과, 구급대원의 제지행위는 상해를 입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급대원의 행위는 방어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²⁵⁾

2021년 1월 5일 「소방기본법」 제27조의 2조항이 신설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생겼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대의 소방활동이나 생활안전활동

25) 정웅석·최창호·이경렬·김한균,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21., 71면 참조.

26) 전주지방법원 2019.12.23., 2019고합169 판결.

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이는 상기 사례와 같이 주취자 또는 정신질환자 등 폭력 및 난동상황에서 119구급대원의 형사법적 문제에 위법성 조각사유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나, 법령으로만 명문화 되었을 뿐 방해가 행위들을 어떻게 제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며, 비례원칙에 따른 필요·최소한도로 제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매뉴얼 또는 법적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²⁷⁾

이에 관해서 소방청 훈령으로 “구급현장매뉴얼”을 만들어 구급대원의 의견과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반영하여 구급현장에서 마주치는 사례를 위주로 경찰 매뉴얼 관리규칙을 참조하여 방해행위의 기준을 마련하고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도로 하며, 언어적 통제 후 물리력을 최후 수단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119구급대원 현장표준지침”등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다.²⁸⁾

물론 물리력을 사용하는데 있어 응급의료체계에서 환자의 치료개념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물리력 수단 중 후추 스프레이, 전기충격기, 3단봉 등 사용은 환자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신체보호대사용에 대한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자는 의견²⁹⁾이 있으며, 119구급대원 표준지침에 손목 억제대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경찰이 오기 전에 시행할 수 없고, 구체적인 방법이 기술되어 있지 않아³⁰⁾ 환자의 안전을 고려한 구체적 매뉴얼을 개정하는 것도 의료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신임 소방공무원 기본교육은 의료 관련 법령 및 소방 관련 법률만 교육하여 현장에 배출되고 있는데, 구급 현장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27) 임재만·김진현, “소방활동 방해행위 제지를 통한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방안”, 한국화재 소방학회(제36권 1호), 2022. 12., 77면 참조.

28) 임재만·김진현, “소방활동 방해행위 제지를 통한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방안”, 한국화재 소방학회(제36권 1호), 2022. 12., 78면 참조.

29) 박시은·신동민, “119구급대원 폭행피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신체 보호대를 중심으로”, 한국응급구조학회(제23권 1호), 45면 참고.

30) 소방청,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2022., 487면 참조.

「형법」 및 「형사소송법」 등 다양한 법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부수적 교육도 수반되어야 구급현장에서 발생될 법률위반에 대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V. 나가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적법하지 아니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개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도 아니 될 것이다.

그러나 소방활동방해죄의 문헌을 좁게 해석하여 적용하게 된다면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소방활동방해 외 구급활동의 특수성 등이 반영되지 못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는 결국 소방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구급활동 통해 안전을 영위하여야 할 다른 개인의 권리 및 법익침해로 이어질 것이며 사회안전망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더욱이 소방조직을 이루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은 위험성, 긴급성 등의 특성을 지닌 업무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작업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감과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바³¹⁾ 소방활동방해죄에 대한 구성요건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소방기관 전체의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능력을 약화시켜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안전한 삶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방활동방해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소방기본법」 및 「119법」을 중심으로 구성요건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향후 소방활동방해죄를 적용함에 있어, 더욱 심화된 고찰과 논의를 통하여

31) 장혜선, 「경기지역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업무상 손상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6-7면 참조.

소방형법에 관한 이론이 정립되고 관련 법규정 및 법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 조화로운 법해석을 통하여 「소방기본법」에서 분화되어 나온 「119법」의 취지에 맞게 사회 안전망 중 하나인 병원진 응급의료에 초점을 맞추어 법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국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틀이 되길 희망한다.

[참고 문헌]

- 박시은·신동민, “119구급대원 폭행피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신체보호대를 중심으로”, 『한국응급구조학회』 제23권 1호, 2019.
- 이상돈, 『형법강론』 제2판, 2017.
- 이정원,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규제법률과 구성요건 및 죄수”,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65호, 대검찰청, 2019. 12.
- 임재만·김진현, “소방활동 방해행위 제지를 통한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방안”, 『한국화재소방학회』 제36권 1호, 2022. 12.
- 임태호, “응급실 의료인 폭행실태와 개선방안”, 『의료정책포럼』 제9권 4호, 대한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1. 12.
- 장혜선, 「경기지역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업무상 손상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정웅석·최창호·이경렬·김한균,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21.
- 정철호·권영복, “소방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행정상 즉시강제의 활용방안”, 『위기관리논집』 제14권 3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8. 3.
- 소방청,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2022. 12.
- 소방청, “2023년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

[국문초록]

소방활동방해죄의 의미와 구성요건개선에 관한 연구 - 119구급활동 방해를 중심으로 -

홍영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 수료, 용인소방서 제2 119구급대 3팀장, 1급응급구조사)

현대 사회는 뜻밖의 사고와 위험 상황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분당 다리 붕괴사고와 이태원 압사사고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급성심정지나 뇌졸중과 같은 중대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조치와 전문 의료 기관으로의 원활한 이송이 필요한 경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119구급대는 응급 의료 시스템 중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중대한 외상 환자나 중증 질환 환자의 응급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손상을 최소화하고, 응급의료 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이와 관련된 핵심 활동이 구급활동인 것이다.

특히, 119구급시스템은 응급 환자의 병원 이송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나, 구급대원들은 업무수행 중 구급활동 방해 사례에 여전히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방해 사례는 경찰의 협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고, 구급활동은 공무집행 방해죄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며, 응급의료 시스템 내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및 장비 파손과 같은 사례와도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119구급시스템을 포함한 응급 의료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해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소방 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구급활동 방해죄의 조건을 정립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주제어: 소방활동방해, 구급활동, 구급대원폭행, 특별사법경찰, 응급의료

**A Review on the Improvement of the Meaning and Composition
Requirements of Interference with Fire Protection Activities
– Focusing on Interference with 119 EMS Activities –**

Young Pyo Hong

Graduate school of Law, Korea University

=ABSTRACT=

Modern society is facing an unstable environment due to unexpected accidents and hazardous situations. For example, incidents such as the collapse of the Bundang Bridge and the crushing accident in Itaewon could serve as examples. In addition to these, critical emergencies like sudden cardiac arrests and strokes frequently occur, requiring swift actions and smooth transfers to specialized medical institutions for effective responses.

In response to these risks, the country has been establishing various systems to protect the lives and safety of its citizens. Among these, the 119 First Aid Activities plays a crucial role within the emergency medical system. Its goal is to promptly respond to critical emergency situations involving severe trauma patients or patients with serious illnesses, minimizing damage and safeguarding lives by swiftly transferring them to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s for specialized treatment. The core activity related to this is emergency rescue operations.

In particular, the 119 First Aid system serves as a crucial institution responsible for the hospital transportation of emergency patients. However, rescue personnel still encounter cases of interference with their activities during their duties. Despite efforts from the police, these interference cases persist, and they share similarities with the crime of obstructing official duties. Interference with emergency activities exhibits a comparable nature to instances such as physical assaults and equipment damage against emergency medical practitioners working within the emergency medical system.

Therefor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nd improvement efforts regarding the

issues of interference that arise during the process of emergency medical activities, including the 119 First Aid system, are necessary. The solution to these problems is to establish and improve the conditions for obstruction of first aid activities, focusing on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and the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Keyword : Obstruction of firefighting activities, Emergency rescue activities, Assault on emergency rescuers, Special judicial police, Emergency medical services